

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5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5월 12일

3. 제안 이유

- 민법 제32조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 (조례 제2442조 '99. 2. 26 제정)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(법률 제6022호 '99. 9. 7 제정)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는 민법 제32조와 함께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의 설치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였으나
-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전환하여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'99. 9. 7 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